

kiri Weekly

2011.7.25 제141호

이슈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포커스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도입과 시사점

금융보험 해설

금융회사 자기자본제도(1): 자기자본규제 개요

국내금융 뉴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 상원, 정부부채 한도 증액 절충안 도출

유럽 _ 유럽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일본 _ 금융청, 공식집계 결과 지진보험금 지급액 1.8조엔 발표

중국 _ 2~3급 도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구매 제한정책 적용지역 확대

_ 중국 사회보험법 실시, 사회복지 수준 향상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김대환 연구위원, 이상우 선임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근로기준법」 시행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지급 재원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 수급권이 취약함.
- 퇴직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용이하여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는 생활자금으로 소진됨.
- 퇴직금제도하에서는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인사관리가 제한적임.
- 평균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정작 노후소득 재원이 절실한 자영업자 등은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제도적으로 우월함.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적립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사용자 입장에서 인사관리가 경직되지 않도록 다양한 퇴직급여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며, 이직 또는 퇴직 시 노후소득 재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됨.
- 가입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함.
- 이밖에도 수급권 강화, 가입의 용이성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퇴직금제도의 단점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하에서 제도적으로 우월한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병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 공적연금의 보장성은 축소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와 병존하고 있어 그 확산이 더디게 진행됨.
-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도 필요함.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선진국형 퇴직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출산율도 OECD 중 가장 낮아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조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은퇴자들의 소득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인구의 부담 증가,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은퇴자들의 노후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제도(이하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병존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월 현재 3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대부분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¹⁾.
 - 현재 전체 사업장의 7.3%, 4인 이하 사업장의 3.3%만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본고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연금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을 보임으로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함.

1) 고용노동부(2011. 5. 27), 「2011.4월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현황」.

2.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가. 미흡한 수급권 보호

■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지급 재원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퇴직금 적립금의 회사 내 유보를 허용할 경우 기업파산 시 회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적립금 보존이 자유로울 수 없음.

■ 퇴직금제도하에서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수급권이 미흡한 상태임.

-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도입하여 퇴직금지급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외 적립된 금액만큼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²⁾.
-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태생적으로 퇴직금 재원의 사내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을 이용하지 않아도 됨.
-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을 이용하여 사외 적립을 하더라도 최저 적립기준이 없는 상황임.

나. 중간정산으로 인한 노후소득 재원소진

■ 퇴직금제도는 퇴직 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음.

-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함.
 -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전무하여 퇴직금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퇴직금제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됨.

2) 퇴직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 재원 사외예치상품으로 퇴직신탁은 은행에서 판매, 퇴직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함.

- 노동부의 설문조사결과³⁾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70.8%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노동조합이 존재할수록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비율이 높음.
 - 근로자수 10~49명 이하는 69.6%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81.8%가 중간정산을 실시함.
 -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84.4%가 중간정산함.

■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는 대부분 생활비로 소진되고 있어 중간정산에 따른 노후소득 재원의 소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됨.

-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중간정산을 경험한 근로자 대부분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으며, 단 6.7%만이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 및 투자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중간정산 퇴직금 사용처

(N=55, 복수응답 포함)

사용처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 또는 투자	생활비, 내구재 구입 등에 지출	자녀 교육비 지출	자녀의 결혼 자금 및 주택 자금	부채 해결	장기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단기적인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기타
비율	6.7%	60.0%	26.7%	10.0%	56.7%	23.3%	3.3%	6.7%

자료: 보험연구원(2009).

- 퇴직적립금에 대한 중간정산이 빈번한 이유는 퇴직금제도하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함.

다. 인사관리의 중요성

■ 퇴직금제도하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연한 인사관리가 제한적일 수 있음.

-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산출기준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하에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 반면, 연봉제 등 성과주의체계 하에서는 성과에 따라 기준 임금이 변동하므로 퇴직금도 그 변동에 영향을 받음.

3) 김원식 · 신문식(2008. 12),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용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동부.

- 또한, 고용은 연장하되 일정연령 이후에는 기준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가 어려움.

라.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노후소득보장 미흡

-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퇴직금제도는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음.
- 2009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4년 11개월이며, 정규직의 경우 6년 7개월, 비정규직의 경우 1년 9개월에 불과함.
 -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한 후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취업연령도 상승하여 근로기간이 단축되고 노후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표 2〉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구분	평균 근속기간		
	2007. 3	2008. 3	2009. 8
〈 임금근로자 〉	4년 6개월	4년 8개월	4년 11개월
정 규 직	5년 11개월	6년 1개월	6년 7개월
비정규직	2년 2개월	2년 2개월	1년 9개월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각 연도.

마.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 방치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퇴직급여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음.
- 도입 초기 3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던 제도가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 2010년 4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어 전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게 됨.

-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32,8%(2006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퇴직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해 퇴직급여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3. 퇴직연금제도의 우월성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에 도입됨.
 -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공적연금(1층 노후소득보장 장치)을 보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과 함께 현재의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함.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가교 연금(Bridge Pensio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우월성을 보유함.
 - 첫째, 퇴직금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강화됨.
 - 퇴직금제도와 달리 사용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의 60% 이상을 사외적립해야 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됨.
 - 둘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노후생활자금으로 쓰여야 할 퇴직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다만, 모든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여 필요 시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을 최대화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⁴⁾.

- 또한, 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⁵⁾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기타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적립금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간정산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⁶⁾.
- 셋째,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 인사관리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급여제도가 설계 가능함.
 -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음.
- 넷째, 이직 또는 조기퇴직 시 노후소득 재원의 연속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이직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의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 이전이 가능하고, 조기퇴직하거나 새로 입사한 직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퇴직금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IRP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음.
- 다섯째,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IRP 가입을 허용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⁷⁾.
- 여섯째, DB 및 DC형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IRP를 설정하여 적립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가 허용되고 있음.
- 이밖에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가입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 우월성을 가진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근퇴법 제11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사유)

5)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변경함.

6) 근퇴법 제8조(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7) 근퇴법 개정안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근퇴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근퇴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에도 퇴직연금제도는 의무가입제도가 아님.
- 근로자의 수급권, 퇴직적립금의 영속성, 가입의 용이성, 제도적 유연성 등 퇴직금제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월한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병존시키기 보다는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은 축소되어 가는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와 병존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중심의 퇴직급여제도로 빠르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기능에 부합함.
- 중간정산 경험자들 대부분이 퇴직금을 노후소득 재원이 아닌 생활비로 소진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과정에서 누적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절실함. [kiri](#)